

정보화사회실천연합

문서번호 201311-004

일 자 2013년 11월 25일

수 신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및 정보화 예산 담당자

참 조 미래창조과학부 및 안전행정부 정보화 정책 부서

제 목 정보화 예산 이월 집행에 대한 제도 개선 제안

현행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예산에 대하여 당해 년도에 집행하여야 하는 원칙에 따라 국가정보화 사업 중 구축(개발)사업의 파행적인 수행으로 구축사업의 산출물의 품질의 저하 및 SW엔지니어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최소한 정보화 사업 중 구축(개발)사업에 대하여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개선을 제언합니다.

1. 현행 예산 집행 지침에 따른 문제점

- A. 당해 년도 내에 예산집행을 위하여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평균 수행기간이 일정한 기간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B. 분서 자료의 <도표1>의 내용과 같이 3억~6억 규모의 평균사업기간이 6.8개월임 보이고 있으나 40억 규모의 사업 또한 평균수행기간이 7.6개월로 사업이 추진됨.
- C. 또한 <도표2>의 내용과 같이 1월의 평균사업기간이 8.5개월임 보이고 있으나 사업수행시기가 연말로 갈수록 점점 평균수행기간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D. 이는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하여 개발기간이 늘어나야 하는데 12월까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현상임.

2. 정보시스템 구축의 특수성

- A. 정보시스템 구축에서 단계별(요구사항정의,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수행기간의 최소한의 절대적 소요기간을 고려하지 않으면 시스템 전체에 대하여 무결성이 보장되기 어려워 시스템 품질의 저하를 초래 함.
- B.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수행 시 년 차별 과업범위를 나누어 수행할 경우 차기 년도 사업 시 수행사업자변 변경 및 참여인력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스템의 연속성 및 무결성(전년도사업의 상당부분을 수정하여야 하는 현상이 발생)을 유지하는데 공수의 중복으로 예산의 낭비 및 전체 시스템 품질의 저하를 초래 함.

C. 특히 데이터베이스는 시스템의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1차사업에서 무결성을 갖추지 못하면 차기 사업에서 수정이 거의 불가능함, 이는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해당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전부 변경하여야 함.

D. <도표 4>와 같이 1차년도사업의 완료 후 무상보수기간이 1년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 시 2차년도 수행사업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의 어려움이 야기되어 전체적으로 시스템 품질의 저하 및 해당 계약에 대하여 사업자와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3. 현행 제도에서도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하는 제도가 있으나 “**사고이월**”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담당공무원들이 적용을 기피하는 상황으로 <도표1>, <도표2>, <사례 1>과 같이 기형적으로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4. 그러므로 최소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시 사업기간이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기 모호한 사업기간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업기간에 대하여 해당 예산의 일부분을 차기 년도로 이월하여 집행 할 수 있도록 가칭 “정보화 사업 예산 이월 집행”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합리적인 정보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본 제도를 제안함.

5.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기대효과.

- A. 정보화 담당자의 합리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
- B. 정보시스템의 품질 향상 및 오버랩의 감소로 예산의 절감
- C. SW사업자의 추진사업의 안정적인 사업관리
- D. SW엔지니어의 근무환경을 개선(월화수목금금금,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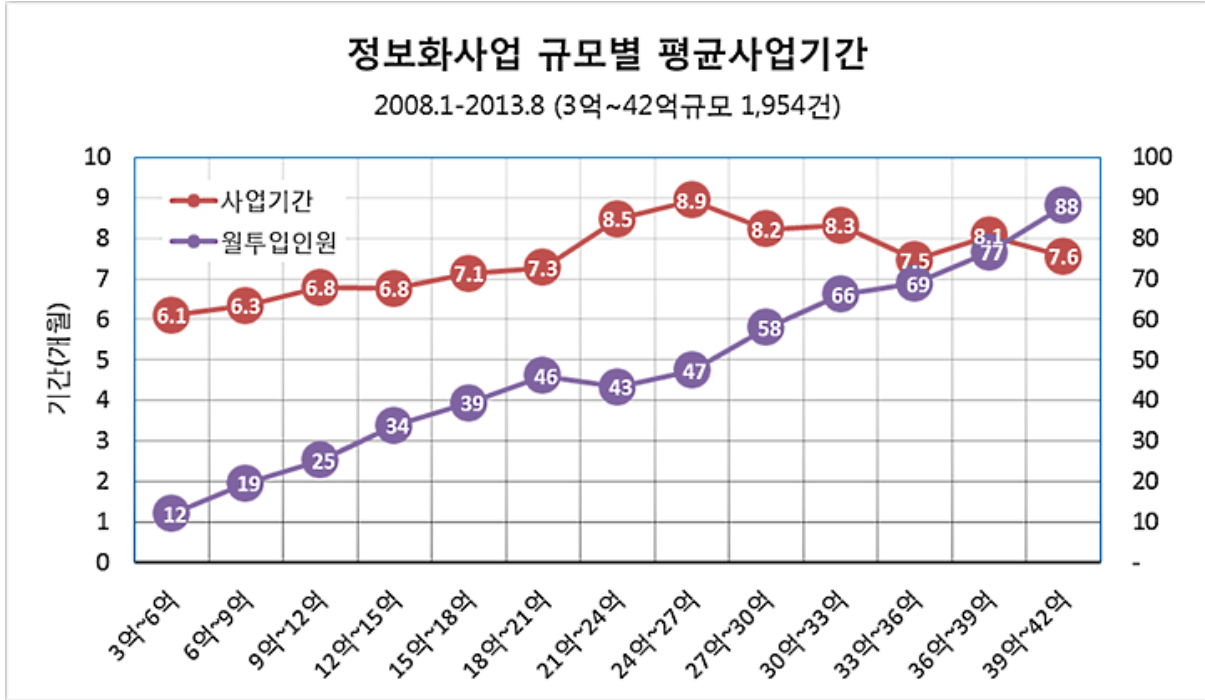
-끝-

정보화사회실천연합대표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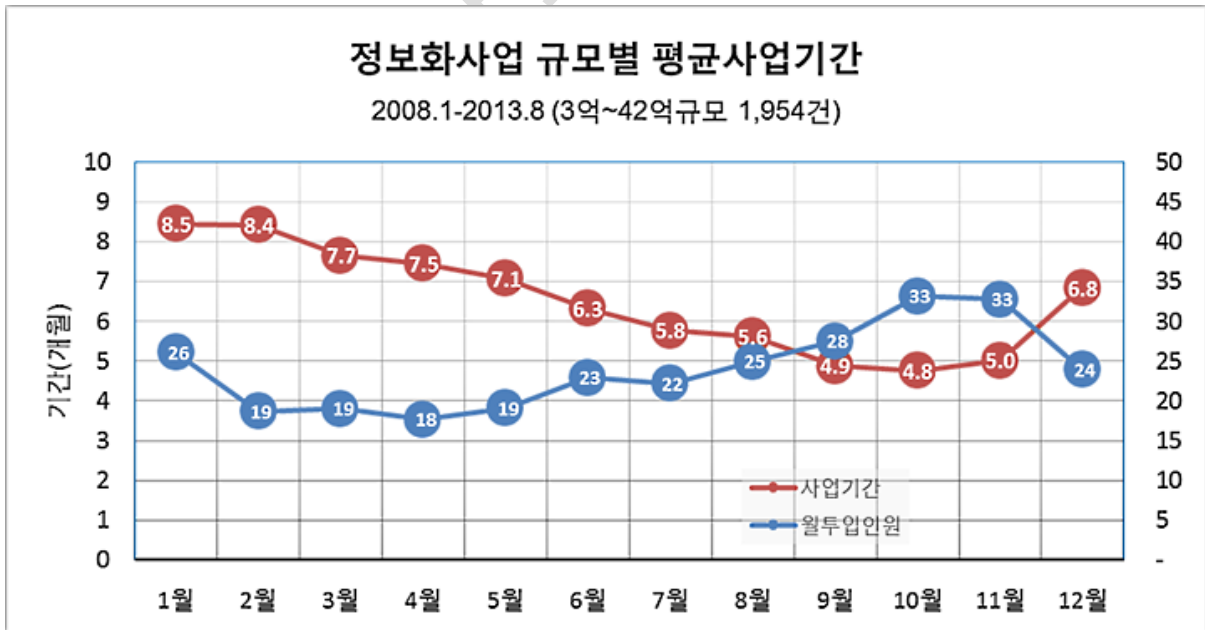
정보화
연합인

◆ 분석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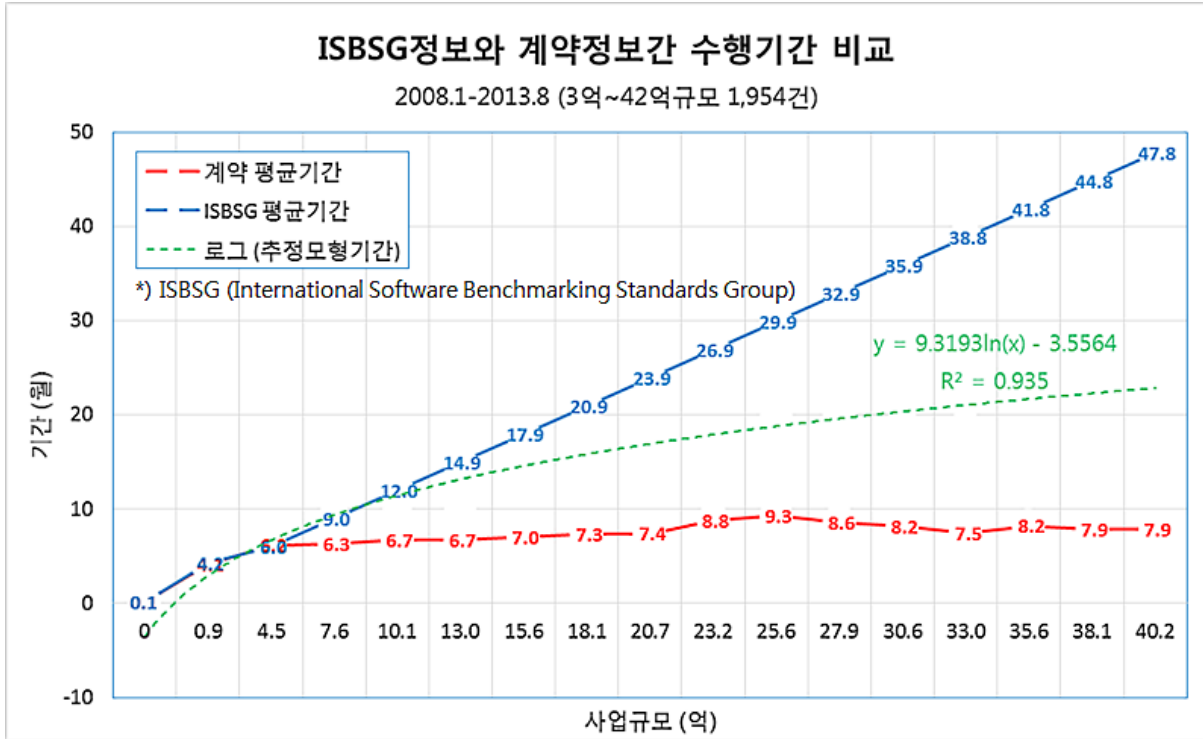
본 자료는 2008.01부터 2013.08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의 구축사업 계약현황 8,181건 중 사업규모가 3억이상~42억이하(1,954건)을 분석한 내용



<도표 1. 정보화사업 규모별 평균사업기간>



<도표 2. 월별 정보화사업 평균사업기간>



<도표 3. ISBSG정보와 사업 규모별 평균사업기간의 비교>

위 <도표 1>, <도표 2>의 도표를 살펴보면 사업규모가 증가하여도 수행기간의 증가 없이 월평균 투입인원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 반면 ISBSG의 정보화 사업의 벤치마킹 결과인 <도표 3>을 살펴보면 대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음. 이는 공공 정보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보시스템 구축의 공학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집행 규정을 따른 결과임.

◆ 사업기간 조정 (예)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차사업 1차년도	사업수행	←————→																																			
	무상보수													←-----→																							
연차사업 2차년도	사업수행													←————→																							
	무상보수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단일사업	사업수행	←————→																																			
	무상보수													←-----→																							

<도표 4. 예산이월 집행을 적용한 정보시스템 구축 일정 (예)>

<사례 1. 나라장터 정보화 사업 제안요청서>

공고번호 20130726726-00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1차 구축

공고일자 2013/07/31 17:26 입찰일자(2013/08/21 16:00)

배정예산 ₩2,808,000,000원 사업기간 4개월

라. 추진일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구분	M	M+1	M+2	M+3		
공통	<u>사업착수</u>							
	개발환경구성							
	Framework 정의							
	표준 정의							
	공통 기능 개발							
업무 기능	분석	요구사항정의						
		UI 기획						
		USE CASE						
		클래스 정의						
		화면 정의						
	설계	클래스 설계						
		시퀀스 설계						
		화면 설계						
		보고서 설계						
		논리데이터 설계						
		물리DB 설계						
	개발	소스 코딩						
		단위 테스트						
	테스트	통합 테스트						
		사용자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연계	분석	연계 대상 정의 및 분석					
			I/F 정의					
설계		연계 협의						
		I/F 설계						
개발		연계 기능 구현						
		연계 단위 테스트						
테스트		연동 테스트						
		연동 데이터 검증						
초기 데이터 구축	분석	초기 데이터 구축 범위 정의						
	설계	초기 데이터 적재 기능 설계						
	개발	초기 데이터 적재 기능 구현						
		초기 데이터 이관/적재						
	테스트	초기 데이터 검증						
주요 행사 ▲ : 보고 △ : 감리 ○ : 워크숍			▲ 착 수 보 고		○ 워 크 숍	△ 설 계	△ 관 료	▲ 종 료 보 고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오픈 후 안정화 기간(최소 1개월 이상) 확보

참고. 관련법령

국가재정법 [시행 2014.1.1] [법률 제11821호, 2013.5.2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예산정책과) 044-215-7134

제24조(명시이월비)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항마다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승인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한 경우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⑥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 이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세입에 우선적으로 이입하여야 한다.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8.2.29>

국가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3.4.5] [대통령령 제24496호, 2013.4.5,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예산정책과) 044-215-7134

제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비의 과목과 금액 및 사유
2. 제1호의 금액 중 다음 연도에 지출할 금액

제18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경비유형 및 비목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 및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용 및 이용권 위임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 또는 같은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
2.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 경비
3.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월한도는 해당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3>

④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이월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
2.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3.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다음 연도에 이월할 금액 및 당해 경비의 현 연도와 다음 연도의 예산과목
4.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불용액
5. 이월이유

◇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3.01 기획재정부]

제2편 2013년도 예산 집행지침..... 15
 I. 일반지침..... 17
 1.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19

※ 경쟁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중소기업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제외)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국제입찰대상금액(기획재정부 고시)
 - 물품 및 용역 25억원, 공사 95억원 등
 • 관련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5. 예산의 이월

-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이월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예산이월 또는 불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여야 한다.
 -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양한다.
 - 이월된 예산은 이월된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수 없다.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재이월할 수 없다.

- 국가재정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를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또한 이월절차 없이 실행되지 않은 예산을 보관할 수 없으며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1-6. 신속한 대금지급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사업법」 제5조의2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검사가 완료되어 조달청 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으면,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대가(금)지급 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7. 국고금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고자금 집행지침 준수

-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고자금 집행지침」(기획재정부 국고과-1570...10.6.10)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자금배정 및 지출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로 지출 가능한 금액 범위내에서 자금지출순기에 맞게 자금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III. 주요 질문모음(FAQ)

(1) 이월제도의 개념, 종류 및 절차..... 373
 (2) 재이월이 가능한지 여부..... 376
 (3) 이월된 예산도 사정변경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378
 (4) 사고이월된 예산을 재계약하여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378